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Rev.2

배포부서	전 부서	배포일	2024.07.10
------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01. 목 차	Rev	2

0.1 목차	2
0.2 개정이력	3
1. 총칙	4
2. 조직 및 업무	6
3. CP의 운영 등	12
4. 기타	19
5. 부칙	2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02. 개정이력	Rev	2

제·개정 차수	제 · 개정일	제·개정	제 정 내 용	비 고
0	2024.03.04	제 정	최초 제 정	
1	2024.04.23	개 정	1 제5조대표이사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권한 변경(대표이사 → 이사회) 2 제7조자율준수관리자권한 추가 1 자율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권 3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권 4 CP 기획, 운영 및 감독권 3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기존 2개항을 5개항으로 세부화 및 신설 4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과 역할) ①항 ① 자율준수협의회 개최주기 반기 1회 이상 →분기1회 이상 5 제14조(사전업무협의제도) *기존 2개항을 4개항으로 구체화 및 신설	
2	2024.07.10	개 정	1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과 역할) ①항 개최주기(분기 1회 →월 1회) ②항 6호 신설 →사전업무협의제도 역할 추가 2 제19조(내부감시체계)② - 내부감시체계 운영 결과 보고 대상 변경(이사회 → 대표이사) 3 <별첨1> 사전업무협의제도 업무 프로세스(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1. 총 칙	Rev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이하 ‘CP 운영 지침’이라 한다)은 (주)만보중공업(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회사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 원칙) CP 운영 지침은 회사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 반하는 회사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 운영 지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 정의) CP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 포함한다.
- ② CP는 CP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의한 시스템을 뜻한다.
- ③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한다.
- ⑤ 최고이사결정기구(이하 ‘최고경영자부처’)는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 ⑦ CP 운영팀장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CP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자를 뜻한다.
- ⑧ CP 운영팀은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해당한다.
- ⑨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 기준은 최고경영자부처 CP 담당 임직원까지로 정한다.
- ⑩ 위험관리 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1. 총 칙	Rev	2

높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뜻한다.

- ⑪ 임직원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
- ⑫ 제재 조치는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는 인사 규정에서 정한다.
- ⑬ 법 위반 행위는 CP 운영팀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CP 운영팀이 직접 검토하여 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⑭ 현장 점검은 위험관리 부서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 업무 행위 및 생산 서류를 CP 운영팀 주관하에 점검하고 조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 ⑮ 자율준수편람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 ⑯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회사, 고객, 협력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2. 조직 및 업무	Rev	2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대표이사의 의무와 권한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 ① 대표이사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이사의 권한)

- ① 대표이사는 CP 운영 관련 최고이사결정권한을 가진다.
-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임원 중 가장 적합한 자를 임명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다만, 회사 내부 가용 인력과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관리 부서와 상응하는 부서의 소속인 자가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위험관리 부서와 상충되지 않은 CP 운영 팀장 또는 조건에 맞는 자를 한시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무를 대신하여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2. 조직 및 업무	Rev	2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련되어,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사실은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원활한 CP운동을 위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율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 ②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권
- ③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권
-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 보고권
- ⑤ CP 기획, 운영 및 성과 보고
- ⑥ CP 평가·개선 및 점검권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①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회사와 최고 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회사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⑤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2. 조직 및 업무	Rev	2

제9조(의무 및 직무) 효율적 CP 운영의 의무를 가지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CP 운영과 계획 수립 및 보고
- ② CP 평가 · 개선 방안 수립 및 경영계획에의 반영
-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및 배포
- ④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⑤ 내부 감시체계의 운영
- ⑥ CP 운영팀의 구성 및 운영
- ⑦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
- ⑧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의 선정
- ⑨ 위 7호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 ⑩ 분기별 CP 기획, 감독,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

제10조(CP 운영팀 구성과 역할)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운영팀을 조직하고, CP 운영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CP 운영상의 실무처리
 3.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4.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CP 운영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CP 운영팀 담당자는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2. 조직 및 업무	Rev	2

제3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의 의장의 직을 맡는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위험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협의회의 간사는 CP 운영 팀장이 맡는다.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과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기본 방침 설정,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조치 권고 및 자문
 2.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부서 간의 업무 갈등 조정
 3. 각 위원별 담당 부서의 법 위반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 그에 따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
 4.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 자문
 6. 사전 업무 협의제 역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2. 조직 및 업무	Rev	2

제4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13조(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별지 1]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여, CP 전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CP 전담부서에 보고 하여야한다.
- ④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CP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법규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직원이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거부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받을 때는 즉시 이를 CP 전담 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 ⑥ 각 부서장은 담당 부서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 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업무협의)

- ① 회사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사전업무협의 제도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주관한다.
- ③ 제1항의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제정 · 시행하는 규정에 따른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회사 임직원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연 1회 이상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2. 조직 및 업무	Rev	2

제15조(내부고발)

- ① 임직원은 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CP 운영팀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같이 행위를 한 경우 법 위반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3. CP의 운영 등	Rev	2

제3장 CP의 운영 등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16조(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 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17조(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배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한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배포 시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변경이 있을 때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③항과 관련하여, 법 동향을 월별 1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반기 2회 이상 개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3. CP의 운영 등	Rev	2

제18조(임직원에 대한 교육)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준수 편람 등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와 CP 위반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및 임원은 CP 관련 임원 교육을 받기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율은 50% 이상으로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교육 미이수자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등 CP 위반자를 월주기로 확인하고 위 대상자에 대한 보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 및 특별교육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자의 부서장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인사고과 반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임직원들의 이해 수준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⑥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CP 운영팀이 시행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3. CP의 운영 등	Rev	2

제3절 내부 감시체계

제19조(내부 감시체계)

- ① 회사는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 감시체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
 2. 사전 업무협의 제도
 3. 직접 보고 체계
 4. 내부고발 시스템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내부 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 2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1(공정거래관련법 및 필수법규 위반 위험성 평가)

- ① 회사는 부서별 업무 사항을 조사하여 CP 위반 리스크가 있는 이슈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이슈 사항에 대하여 자율점검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통하여 법 위반 행위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위험평가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CP 운영팀은 위험성 평가 결과 리스크의 크기를 H(High), M(Middle), L(Low)로 구분하고, 위험성 평가결과 Middle이상의 리스크에 대하여 경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⑤ 이외 위험성 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위험성 평가 운영 규정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9조의2(사전 업무협의 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3. CP의 운영 등	Rev	2

- ② CP 운영팀은 위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 문서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등을 활용하여 먼저 회신할 수 있다.
- ③ CP 운영팀은 위 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업무협의 실적은 반기별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직접 보고 체계)

- 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내용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행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③ 대표이사는 위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4(내부고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별도의 내부 고발시스템 세부 운영 지침과 내부고발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고발 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신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운영팀 소속 임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 사실에 대한 별도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부 사항은 세부 운영 규정에 명시 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연 2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이외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규정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3. CP의 운영 등	Rev	2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20조(공정거래법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운영팀과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법규 위반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 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그 임직원의 상급자는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만 상급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준수 및 CP 참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소명하여 이를 인정받은 경우 이를 면책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방법, 기준 등은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 과실 정도와 그 영향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한다.
- ⑤ 제재의 종류는 주의, 경고, 감봉(감급), 정직, 권고해직, 징계면직 등 5종으로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3. CP의 운영 등	Rev	2

제21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회사의 법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임직원 및 CP 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회사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3. 해당연도 인사평가 시 가점부여
 4.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위반 행위 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
- ③ 기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공정거래 담당이 시행한다.

제5절 효과성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제22조(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상 문제점 발굴과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CP 효과 성평가의 절차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 ③ CP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CP 관련 교육성과
 3. CP 운영팀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4. CP 지침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3. CP의 운영 등	Rev	2

제23조(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제22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 CP 규정 개정 추진을 의결하여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대표이사 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2항에 따른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문제점 발굴과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법 위반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전 감사 계획과 감사 후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공정한 감사 활동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감사에 따른 필요 자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③ 피감사 대상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문서 및 서류 등을 요청할 시에 지체 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감사 수행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 수행 기록을 문서화하고, 기록물 관리 대장을 통하여 별도 관리(3년간)하여야 하며, 관리 대상 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 계획서
 2. 감사 통보서(감사의 배경 및 목적, 감사 중점 및 대상, 제출서류 목록, 감사 일정)
 3. 감사 노트(감사 과정 기록)
 4. 감사 결과 보고서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4. 기 타	Rev	2

제4장 기 타

제25조(문서관리)

- ① CP 운영팀은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전 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1.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2.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3.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 ③ CP 운영팀은 위 2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제정과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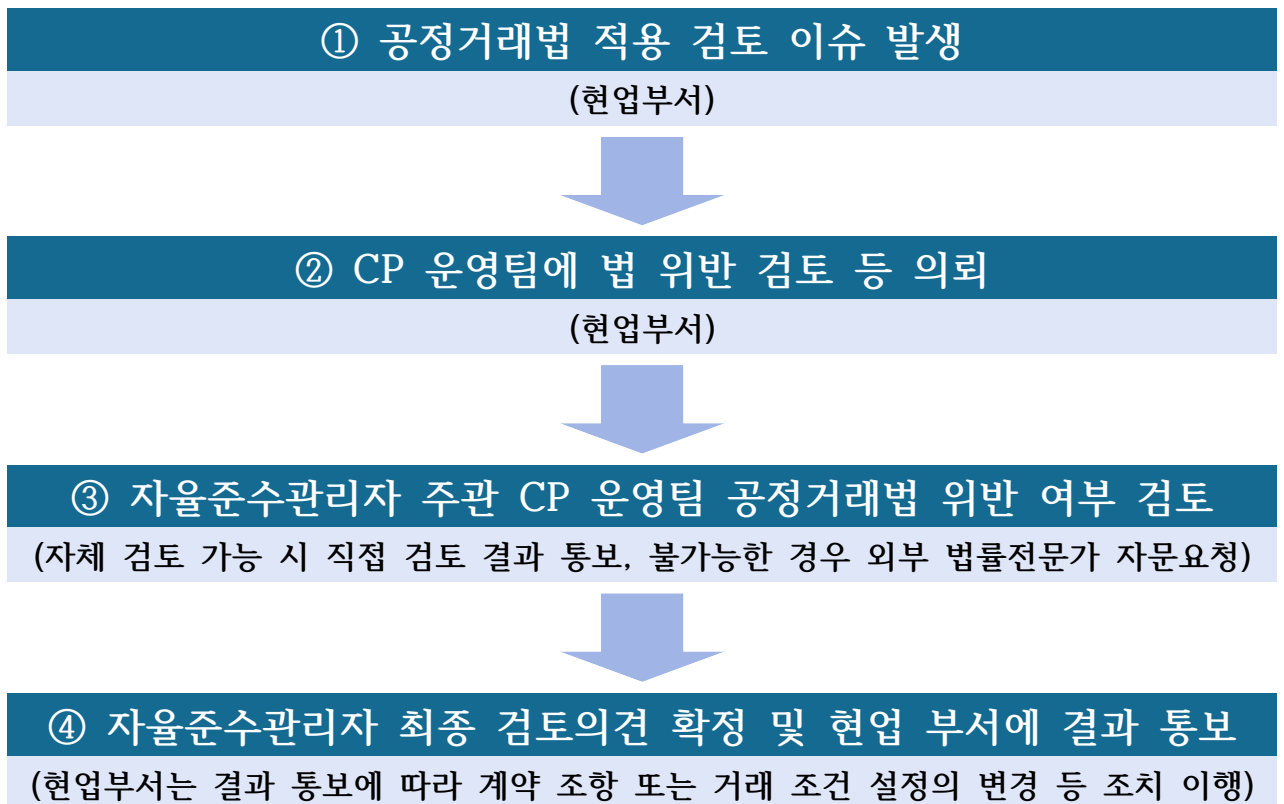
-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최고경영자가 심의하여 정하며,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매뉴얼 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운영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업무환경의 변화, 공정거래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및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기별 2회 이상 본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5. 부 칙	Rev	2

1.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업무협의제도 업무 프로세스



[별표 2] CP효과성 평가 실시 절차 및 단계별 내용

절차 단계	내 용
계획 수립	효과성 평가의 목적, 실시 기간, 설문 작성, 결과 분석 등 전체 계획 수립
실시 안내	설문 실시 목적과 조사 기간 및 참여 협조 요청
설문 배포	CP 운영팀
결과 분석	CP 운영팀
결과 보고	자율준수관리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 개정일자	2024.07.10
	5. 부 칙	Rev	2

[별표 3] 감사 수행 절차와 단계별 내용

단 계	내 용	
계획 수립	감사 범위(감사 대상)와 목적(주요 착안점), 감사팀 구성, 감사 일정 등	
실시 통보	감사 부문 책임자에게, 필요한 경우 감사자료 사전 요청 포함	
위험 평가	조직의 주요 위험 식별 → 통제시스템 평가 및 효과성 검토 → 감사 전략 수립	
감사 수행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으로 운영 절차 검토
	테스트 수행	거래 및 절차에 대한 테스트수행으로 정확성검토
	증거 수집	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충분히 수집
	감사조서를 작성하여 모든 감사활동과 발견된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의 근거자료로	
결론 도출	분석 결과 종합	테스트 결과와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 도출
	의견 작성	감사 의견을 작성하고 이는 감사 보고서에 포함됨
보고서작성 및 제출	감사 보고서 작성	감사 과정 · 결과 및 의견(감사 결과 필요한 시정, 개선,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제출
후속 조치 (감사사후관리)	개선사항 확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 확인
	후속 감사계획	필요한 경우 후속 감사 계획
	감사 결과로 도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단계로 피감사 부문의 시정계획을 점검하고 그 실행을 모니터링. 감사 결과가 실제 기업 운영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	